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9. 2 선고 2020나148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9. 2 선고 2020나1487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619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주현, 이종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정현

변론 종결2021. 7. 8.

판결 선고2021. 9. 2.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6190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기재 주권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양도계약을

18,650,976,7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권 중 3,682,32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기재 주권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양도계약을 18,656,169,4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권 중 3,683,32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을 대위하여 주권 인도 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면 2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D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가장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주권을 피고 B에게 대물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및 C은 약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D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이 사건 주권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와 대한민국의 각 추심금 채권액을 더한 18,656,169,444원(= 원고의 채권액 4,954,178,082원 + 대한민국의 채권액 13,701,991,3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권 중 원고와 대한민국의 각 위 피보전채권을 합산한 18,656,169,444원을 이 사건 주권의 1주당 가치인 5,065원으로 나눈 3,683,32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직접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4면 19행의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면 2행부터 11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7. 8. 가지는 채권액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4,952,739,725원¹⁾인 사실, 대한민국이 2019. 10. 25. D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 29. 'D은 대한민국에게 11,419,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합728 판결), 대한민국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7. 8. 가지는 위 채권액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13,698,237,049원²⁾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경우 D의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피보전채권액 합계 18,650,976,774원(= 원고의 채권액 4,952,739,725원 + 대한민국의 채권액 13,698,237,0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권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26,793,881,620원으로 원고 및 대한민국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18,650,976,77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갑 제20호증, 을 제34, 38, 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8. 9. 30.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피담보채권 5,000,000,000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2. 31. 기준 피고 C의 순자산액은 47,232,544,41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2020. 12. 31. 기준 피고 C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순자산접근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5,065원(= 피고 C의 2020. 12. 31. 기준 순자산액 47,232,544,412원 / 피고 C의 발행주식 총수 9,325,219주,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위 주식의 1주당 가액도 위 5,065원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 중 3,682,325주(= 원고와 대한민국의 위 각 피보전채권액 합계 18,650,976,774원 ÷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5,065원, 한 주 미만 버림)를 표창하는 주권을 직접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반환 청구의 목적물이 피고 C의 주식이므로 취소채권자의 직접 수령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동산에 해당하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D과 피고 B 사이에 2018. 8. 1.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 18,650,976,7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권 중 3,682,32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재환

판사임솔

별지

- 1) 원금 3,500,000,000원 + 위 3,500,000,000원에 대한 2018. 7. 10.부터 2018.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21. 7. 8.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52,739,725\text{원} [= 60,410,958\text{원} (= 3,500,000,000\text{원} \times 126\text{일}/365\text{일} \times 5\%) + 1,392,328,767\text{원} (= 3,500,000,000\text{원} \times (2 + 238\text{일}/365\text{일}) \times 15\%)]$
- 2) 원금 11,419,369,000원 + 위 11,419,369,000원에 대한 2019. 11. 9.부터 2021. 7. 8.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78,868,049원[= 11,419,369,000원×(1+242일/365일)
× 0.12]